

제2875호
2021.10.28.

발행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편집인: 홍 보 전 산 과 장 김 영 혜
 전화: 3396-4951
 (http://www.junggu.seoul.kr)

선	기 관 의 장
람	

구 보

● 자치법규

[입법예고]

제2021-810호 : 서울특별시 중구 고령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2

- ※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행정정보→구보/입법예고) 클릭>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게재의뢰 TEL.(02)3396-4951 / FAX.(02)3396-9022/3
- 구보는 매주 수요일 발행이며,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
- ※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공람											



자 치 법 규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1-810호

이 조례 및 규칙(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0월 28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건강 취약계층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 식사제공, 영양관리 예방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어르신 영양·건강증진 사업의 지원대상자를 만65세이상 중구거주 전체노인으로 확대 시행하기 위한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 가. 어르신 영양건강증진사업 지원대상 확대 (안 제16조의2 제2항)
 - (당초)중구 거주 만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변경)중구 거주 만65세 이상 노인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중구청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 전화 : 3396-5366, FAX : 3396-8730, E-mail : aimhigh23@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첨부 : 서울특별시 중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중구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 및 구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구청장이 정한 기준일 당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민등록법」상 만65세 이상인 노인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의2(어르신 영양·건강사업 지원)	제16조의2(어르신 영양·건강사업 지원)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지원대상자는 구청장이 정한 기준일 당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민등록법」상 만65세 이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구청장이 정한 기준일 당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민등록법」상 만65세 이상인 노인으로 한다.
1. 「기초연금법」에 의한 기초연금 수급자	1. (삭 제)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 (삭 제)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 차상위계층	3. (삭 제)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